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82호 2019. 4. 15.(월)

조 례

○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조례안 -----	3
○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 목포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	17
○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	22
○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31
○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34
○ 목포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36
○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40
○ 목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44
○ 목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47
○ 목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49
○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0
○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7
○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81
○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
○ 목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조례안 -----	86
○ 목포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 제정조례안 -----	89
○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2
○ 목포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9
○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제정조례안 -----	101
○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3
○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107
○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6

규 칙

○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	128
○ 목포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29
○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31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82호 2019. 4. 15.(월)

- 목포시 시립국악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38
-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41

고 시

- 목포시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고시 ----- 150
- 목포 삼진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152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159

공 고

- 도로(건축허가.신고) 위치지정 공고 ----- 161
- 공유재산 매각 일반경쟁 입찰 공고(5차) ----- 162
- 소하천 점용허가 공고 ----- 169

회람							
----	--	--	--	--	--	--	--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35호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
4. 목포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의원이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출장 프로그램인 맞춤형 의원 공무국외출장 하는 경우
7. 기타 목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의회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

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⑥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① 목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와 심사결과표는 별지2호 내지 별지3호와 같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회의 개최 요구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심사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전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장은 제출된 출장계획서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결과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적정 : 출장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정상추진이 가능한 경우

2. 보완추진 : 출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출장국, 방문기관, 출장기간 등의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추진 가능한 경우

※ 출장자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국외출장계획서를 보완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보완여부를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승인한다.

3. 재검토 : 출장의 타당성 결여로 추진해서는 아니되는 경우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심사결과를 3일 이내에 목포시의회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고 심사회의를 2주 이내에 목포시의회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4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30일전에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

출하고 의장은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대면 또는 서면 보고하여 출장의 적정추진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별지 제4호 서식 출장결과 심사표를 목포시의회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 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4. 1일 최소 1개 이상 적정 기관을 방문하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 **심사결과**

○ 적정 () ○ 보완추진 () ○ 재검토 ()

☐ **보완추진 또는 재검토 사항**

○

위와 같이 20 년도 목포시의회의원에 대한 공무 국외출장계획을 심사하였음.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인)

[별지 제3호 서식]

목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종합심사표☐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 ~ 20 < 박 일 >
- 출 장 국 :
- 참 여 자 : 명 ()
- 연수내용 : 목포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 참조 (별첨)

☐ **심사결과**

심사위원		심 사 결 과			비 고
소 속	성 명	적정	보완추진	재검토	

☐ **종합결과**

- 적정 () ○ 보완추진 () ○ 재검토 ()

☐ **보완추진 또는 재검토 사항**

○

위와 같이 20 년도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심사하였음.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목포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결과 심사표☐ **여행개요**

- 여행기간 : 20 ~ 20 < 박 일>
- 여 행 국 :
- 참 여 자 : 명 ()
- 심사내용 : 목포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참조 (별첨)

☐ **심사결과**

심사위원		심 사 결 과			비 고
소 속	성 명	적정	개선필요	환수필요	

☐ **출장 보고서 심사결과**

- 적정 () ○ 개선필요 () ○ 환수필요 ()

☐ **기타의견**

○

위와 같이 의원 공무 국외연수추진결과를 심사의견을 제출함.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목포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 I.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 II.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 III.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보고서>****○○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2) 속표지 예시**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36호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를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소속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를 “소속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전문위원) ①<u>소속위원회의</u> <u>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u> <u>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u> <u>문위원을 둔다.</u> ②전문위원은 <u>위원회의 의안을 검</u> <u>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u>	제4조(전문위원) ①<u>의회의 각 상임</u> <u>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소</u> <u>속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u> <u>기 위하여</u> -----. ②----- <u>소속 위원회의 의안을</u> <u>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위</u> <u>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u> <u>무를 처리한다.</u>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37호

목포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목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고령화”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 등) ① 시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목포시(이하“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

여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목포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공기관, 그 밖의 단체 등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업·단체등 지원)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관내 소재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목포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제5조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저출산·고령화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계기관 및 민간 단체 대표 또는 관련자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임기) ① 임명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남은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안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제14조(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시장은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출산 지원 사업
3. 양육·보육·교육 지원 사업
4. 일자리·주거 지원 사업
5.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6. 일·가정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사업
7. 그 밖의 저출산 대책 및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고령사회 대책 사업 추진 등) 시장은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용과 소득 지원 사업
2. 건강증진 사업
3.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사업
4. 여가·문화·사회활동 장려 사업
5. 그 밖의 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인구교육)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 출산, 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과 세대간 이해 증진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홍보)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38호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목포시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사항을 기록·보존·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5. “내부이력관리 사업”이란 주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감성 등으로 인하여 공개하기가 어려운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정책의 실명관리)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 직원이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시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실명제 운영의 기본방향
2.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정책실명제 홍보·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획문화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단, 정책연구 용역은 3천만원 이상
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나. 시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다. 시민의 재정 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6. 이 조례에 의한 시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관계공무원, 연구 용역기관, 사업수행 기관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자로 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목포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 관리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복지국장, 관광경제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 이상을 다음 각 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
2. 시의회 의원
3. 시민단체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업무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 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⑧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 ①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중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관리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완료 후에도 3년간 공개한다.

제12조(홍보 및 교육)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 인터넷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시행 및 담당자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책실명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위탁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평가에 따른 조치)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를 명령할 수 있다.

1. 민간인 또는 민간기업: 인센티브 제공 또는 향후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일정기간 참여배제(또는 영구배제)
2. 공무원: 포상 또는 징계
3. 소속기관: 예산 및 인사상의 혜택 부여 또는 불이익 조치
4. 그밖에 시장이 정책 평가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②담당자 (연락처)	
③정책사업명			
④선정기준		⑤사업기간	
⑥주요내용			

<기재항목>

- ①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 ② 담당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함께 기재
- ③ 정책 사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 ④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 ⑤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점 기재
- ⑥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또는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

①등록번호	②정책명	③정책요지	④사업부서	⑤담당자

<기재항목>

-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4-1, 2014-2)
- ② 정책명 : 사업명을 기재
- ③ 정책요지 : 정책추진 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을 간략하게 기재
- ④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 ⑤ 담당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4-01	담당부서 작성자	(실·국 / 부서명) (이름/사무실연락처)
정 책 명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사업의 추진 목적과 사업의 실시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기록 ○ 추진기간 : 20○○.○.○○ ~ 20○○.○.○○ ○ 총사업비 : ○○○백만원 ○ 주요내용 - ○ 추진경과(사업추진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보고사항 등 전 과정의 주요 추진실적을 날짜순서대로 기록) - 2011.○.○.~2011.○.○. : ○○○○사업 연구용역 - 2012.○.○. : ○○○○○○○○ - 2012.○.○. : ○○○○○○○○ - 2012.○.○. : ○○○○○○○○ - 2012.○.○. : ○○○○○○○○ <추진경과 작성 예시> - 2011.07.27 : 도립천 범람 - 2011.09.14 : 관악산저류조 긴급공사 시행계획 결정 - 2011.10.27 : 설계용역 착수 - 2011.12.29 : 공사 및 감리용역 착수 - 2011.12.~2012.06. : 서울대학교, 시민단체 사업반대로 이해 관계 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안 수립 - 2012.06.20 : 사업계획 변경방침(행정2부시장 방침 제205호) - 2012.07.~08. : 임시저류조 설치, 운영(2회) - 2012.09.~현재 : 설계, 시공 병행 추진중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 ○급(직급) ○○○(성명) - 최종 결재자 : ○○ ○급(직급) ○○○(성명)		

	○ 사업 관련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성명</th> <th>직급</th> <th>수행기간</th> <th>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th> </tr> </thead> <tbody>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차관</td><td></td><td></td><td></td><td></td></tr> <tr><td>실·국장</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과장</td><td></td><td></td><td></td><td></td></tr> <tr><td>과장</td><td></td><td></td><td></td><td></td></tr> <tr><td>팀장</td><td></td><td></td><td></td><td></td></tr> <tr><td>팀장</td><td></td><td></td><td></td><td></td></tr> <tr><td>담당</td><td>홍길동</td><td>6급</td><td>'00.0.0~0.0</td><td></td></tr> <tr><td>담당</td><td>임격정</td><td>6급</td><td>'00.0.0~0.0</td><td></td></tr> </tbody> </table>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					차관					실·국장					⋮					과장					과장					팀장					팀장					담당	홍길동	6급	'00.0.0~0.0		담당	임격정	6급	'00.0.0~0.0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																																																								
차관																																																								
실·국장																																																								
⋮																																																								
과장																																																								
과장																																																								
팀장																																																								
팀장																																																								
담당	홍길동	6급	'00.0.0~0.0																																																					
담당	임격정	6급	'00.0.0~0.0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외부 관련자도 단계별 관련자를 모두 기록 -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변경된 경우 이전 관련자도 함께 기록 <예시>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토목부장 : 지방시설서기관 박종웅 - 치수시설과장 : 지방시설사무관 서관석 - 담당자 : 지방시설주사보 조동협 ○ 설계자 - (주)한국종합기술 ○ 시공자 - 남광토건(주) ○ 감리자 - (주)신명건설기술공사																																																							
추진실적	추진경과별 실적내용을 날짜 순서대로 첨부																																																							

※ 추진실적은 추진경과의 모든 목록의 내용을 날짜순서대로 PDF파일 또는 한글 파일로 첨부하여 공개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39호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질서유지)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6. 거리공연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지역 주민,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거리공연가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의 육성·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공연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 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 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법인·단체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40호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목포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시설”이란 목포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목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목포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목포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제5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하되 30% 이내의 범위에서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41호

목포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3조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제3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들의 문화·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날, 경로회 달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② 시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노인복지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노인복지증진과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목포시 노인복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및 노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정책 관련 주요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자치행정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2. 노인복지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인 등
3. 기타 관련기관 관계자 등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경로우대) 시장은 노인 및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해 목포시가 설치·운영하

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노인의 시정참여지원) ① 시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시정을 안내할 수 있다.

제10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 제공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
2.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3. 그 밖에 노인문화·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등

제11조(경로식당 운영) 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2. 차상위계층 노인
3.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

③ 경로식당 이외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는 식사를 배달할 수 있다.

④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대상) 시장은 각 호의 시설 또는 해당 노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따른 시설
 -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 다. 노인여가복지시설
 - 라. 재가노인복지시설
 - 마. 노인보호전문기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홀몸노인·기타 저소득 노인

3. 「노인복지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및 참여자 등

제13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12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및 기능보강사업비
3.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설날, 추석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성·금품
5.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 지원용 쌀 및 부식비 등

②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또는 해당노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비용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3호의 해당노인에 대하여는 각종 기념행사의 소요경비 및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42호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교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세에서 만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 · 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연계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다함께돌봄센터”란 초등학교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예산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 · 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아동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연계 · 제공
4. 돌봄 상담, 관련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6조(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의 제공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돌봄 아동의 연령
2. 맞벌이 가정
3. 다자녀 가구
4. 다문화 가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 ·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8조(돌봄 시설 위탁·운영) ① 시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할 수 있다.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및 목포시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사안 발생 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43호

목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다른 가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동행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장난감, 도서구매 등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대여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2. 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3.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4.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6.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 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한 것으로 본다.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444호

목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등이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등을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
·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목포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불용의약품등이 약국을 통해 원활하게 회수되고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① 시장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등의 수거함을 비치하여 철저히 수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며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45호

목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 종류 및 횟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접종 1회로 한다.

제4조(비용 지원) 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한다.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목포시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아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46호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본적**” 을 “**등록기준지**” 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증명)			
1. <삭제>			
(1) <삭제>			
2.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가족 사실 확인원	1통	1,000원	
(2) <삭제>			
(3) 독자 사실 확인원	1통	1,100원	
(4) 부재자 사실 확인원	1통	1,100원	
(5) 채무 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등	1통	1,100원	
3.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1통	700원	
(2) 중소기업자	1통	600원	
(3) 광업, 공업, 상업	1통	600원	
4. 시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1통	800원	
(2) 생산실적	1통	600원	
(3) 납품실적	1통	600원	
(4) 건물사용	1통	600원	
(5) 공장 원료 수요	1통	6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6) 공장등록증명서	1건	1,000원	
(7) 공장등록대장 등본	1건	1,000원	
(8) 실수요자 사실 확인원	1통	1,000원	
(9) 시설보유 증명	1통	1,000원	
(10)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증명	1통	1,000원	
(11) 소유사실확인원	1통	1,000원	
(12) 가축 자가사육 사실 확인원	1통	1,000원	
(13) 관상수목 자기생산 사실 확인원	1통	4,000원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의 등·초본 교부			
○ 대장등본	1통	900원	
○ 토지도면	1통	900원	
○ 건물도면	1통	900원	
(2)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	1건	500원	
6.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1,000원	
(2) 표준주택설계 도면	1필지	2,500원	
(3)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1,000원	
(4)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800원	
(5)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8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6) 도시계획 제87조 증명	1필지	1,500원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 증명서	1건	800원 단, 전자민원 (인터넷) 신청 시 무료	
8.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통	1,000원	
(2)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1,000원	
(3) 보상금 지불명령	1통	1,000원	
9. 주택에 관한 증명			
(1) 공(시)영 주택분양금 납부증명	1통	1,500원	
10. 기타 제증명			
(1)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확인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토지대장에 기재발급 ○ 열 람	1필지 1필지 1필지	800원 400원 300원	
(2)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확인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열 람	1필지 1필지 1필지	800원 800원 300원	
(3)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확인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원 (칼라발급의 경우 1,500원)	
(4) 가타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 하는 증명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통	700원	
1. 일반행정 관계			
(1) <삭제>			
(2)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	1건	5,000원	
(3) 공유재산의 대부 산책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①	(4) 국(공)유재산 양도양수 승인신청	1건		3,000원	
②	(5) 국(공)유재산 사용료 완납증명	1건		700원	
③	(6) 기타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900원	
④	(7)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2. 산림 관계					
⑤	(1)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원	
⑥	(2) 개간허가증 교부	1건		2,000원	
⑦ 3. 농축산 관계					
⑧	(1) 축사표준설계 도서발급 신청	1매		1,000원	
⑨	(2) 가축 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4,000원	
	(3)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4)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⑩	(1)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	1건		10,000원	
⑪	(2)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1건		4,000원	
⑫	(3) 대규모 점포등의 개설등록	1건		100,000원	
	(4) 유통관련업 등록, 허가, 신고	1건		20,000원	
	(5) 유통관련업 등록, 허가, 신고변경	1건		10,000원	
	(6)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8)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 (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원	
(9)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	1건	10,000원	
(10)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 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1건	10,000원	
(11)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 연료 주유소)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원	
(12)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 연료 판매소)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10,000원	
(13)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1건	6,000원	
(14)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규) 신고	1건	1,500원	
(15)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변경) 신고	1건	1,500원	
(16)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1건	1,500원	
(17)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 허가	1건	1,500원	
(18)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 신고	1건	1,500원	
(19)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1건	50,000원	
(20)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1건	20,000원	
(21)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원	
5. 건설 관련			
⑬ (1) 도로 점용(굴착)허가 신청	1건	1,000원	
⑭ (2)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1건	5,000원	
(3)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명의) 변경허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4)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5)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3,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6)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	1건	3,000원	
(7)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3,000원	
(8)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3,500원	
(9)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3,000원	
(10) 토지사용 승락서	1건	3,000원	
(11)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 변경, 소유변경)	1건	3,000원	
(12)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3,000원	
(13)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000원	
(14)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원	
(15) <삭제 2017. 6. 5.>			
(16) <삭제 2017. 6. 5.>			
(17) <삭제 2017. 6. 5.>			
6. 보건사회 관계			
(1)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원	
(2) 부속의료기관 개설변경	1건	20,000원	
(3)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1건	40,000원	
(4)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	1건	20,000원	
(5)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재교부	1건	15,000원	
(6)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7) 치과 기공소 인정신청	1건	10,000원	
(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9) 위생처리업 신고	1건	28,000원	
(10)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6,500원	
(11)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건	28,000원	
(12)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변경신고	1건	26,500원	
(13) 세척제 제조업 신고	1건	15,000원	
(14)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8,000원	
(15)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1건	5,500원	
(16)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3,000원	
(17) 공중 위생업소 허가증(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18) 안경업소 개설 등록신청	1건	10,000원	
(19)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7. 문화공보 관계			
(1)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원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3) <삭제 2015. 10. 12.>			
(4) <삭제 2015. 10. 12.>			
(5) 출판사 등록신청	1건	4,000원	
(6) 출판사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1건	4,000원	
(7)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8)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9)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0)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1)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 신청	1건	20,000원	
(12)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3)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16)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 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변경신청	1건	5,000원	
(17)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18) 영화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19)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원	
(20)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건	20,000원	
(21)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22)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원	
(23)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2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25)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6)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27)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28) 노래연습장 등록 신청	1건	20,000원	
(29)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30) 노래연습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8. 수산업에 관한 사항			
(1) 연안어업 허가	1건	2,500원	
(2) 구획어업 허가	1건	4,500원	
(3) 유해어업의 사용 허가 신청	1건	3,000원	
(4)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 신청	1건	3,000원	
(5) 어업면허 신청	1건	5,000원	
(6) 어업면허 기간 연장허가 신청	1건	3,000원	
(7) 어업권(지분)이전 인가 신청	1건	4,000원	
(8)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1건	2,500원	
(9)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1건	3,000원	
(10) 관대선사용의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	1,000원	
(11)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연장 신청	1건	3,000원	
(12) 토지(공작물)사용 허가	1건	7,000원	
(13) 토지출입 허가	1건	4,000원	
(14)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1건	2,000원	
(15) 어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원	
(16) 어장도 교부	1건	1,500원	
(17) <삭제 2017. 6. 5.>			
(18) 수산물가공업 변경등록	1건	3,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19) 수산물 가공업 등록증 재교부	1건	2,000원	
(20) 수산시설물 처분 승인	1건	3,000원	
(21) 해상종묘 생산어업 허가	1건	6,000원	
(22) 어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원	
(23)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1건	1,000원	
(24) 어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1,500원	
(25) 어업 개시신고	1건	3,000원	
(26) 어업신고	1건	1,500원	
(27) 어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28)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 지분 변경)신고	1건	1,000원	
(29) <삭제 2017. 6. 5.>			
(30) 어업면허 신청 기간의 연장	1건	4,500원	
(31)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 지정증 (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1건	1,000원	
(32) 정치망 어업의 가두리 시설 통지	1건	3,000원	
(33) 종묘살포 신고	1건	3,000원	
(34) 월동장(월하장) 신고	1건	6,000원	
(35) <삭제 2017. 6. 5.>			
(36)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 대표자·선박명칭)	1건	1,000원	
(37) 토지사용(제거제한출입) 허가사항 변경	1건	3,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38) 어장청소 신고	1건	3,000원	
(39) 어업권(지분) 이전등록	1건	4,500원	
(40)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원	
(41) 낚시어선업 신고 변경사항 신고	1건	3,000원	
(42) 낚시 어선업 신고필증 재교부	1건	2,000원	
(43) 포획·채포 금지 해제허가	1건	4,000원	
(44)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1건	3,000원	
(45)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1건	1,000원	
(46) 마을어장(협동양식어업)안의 낚시터 지정	1건	6,000원	
(47) 마을어장(협동양식어업)안의 체험 어장 지정	1건	6,000원	
(48)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원	
(49)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 치망어업)	1건	9,000원	
(50)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1건	7,500원	
(51)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1건	5,000원	
(52)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원	
(53)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건	5,000원	
(54) 내수면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원	
(55) <삭제 2017. 6. 5.>			
(56) 어업권 포기 신고	1건	1,000원	
(57) 육상 해수양식어업 허가	1건	4,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58) <삭제 2017. 6. 5.>			
(59) 어업허가 유예	1건	1,500원	
(60) 한시어업 허가	1건	2,000원	
(61) 한시어업 연장 허가	1건	2,000원	
(62) 시험어업 신청	1건	2,000원	
(63) 허가·신고어업 폐업신고	1건	800원	
(64) 허가어업 휴업 신고	1건	1,000원	
(65)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1건	800원	
(66) 허가어업 재개 신고	1건	1,000원	
(67) 입어 재결신청	1건	3,000원	
(68)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1건	3,000원	
(69)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1건	4,500원	
(70) 어선 건조(건조발주)허가 신청	1건	2,000원	
(71) 어선 개조(개조발주)허가 신청	1건	1,000원	
(72) 어선 건조(건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2,000원	
(73) 어선 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000원	
(74)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 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1건	1,000원	
(75) 어선등록 및 변경 등록 신청	1건	3,000원	
(76) <삭제 2017. 6. 5.>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9.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			
(1)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1건	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1건	30,000원	
(3)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4)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	1건	10,000원	
(4)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원	
(5)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원	
10. 관광업에 관한 사항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1건	60,000원	
(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1건	50,000원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30,000원	
(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원	
(5)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제외) 신고	1건	30,000원	
(6)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원	
(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11. 환경에 관한 사항	1건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3)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	5,000원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u>무료</u>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 (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 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u>본적</u> 주소 또는 거소 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제4조(기준) ①----- ----- ----- ----- ----- ----- 다만, <u>등록기준지</u> ----- ----- -----.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관련)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관련)				
구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구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증명)					(증명)				
1. 인감에 관한 증명					1. <삭제>				
(1) 인감증명	1통	600원			(1) <삭제>				
2. 신상에 관한 증명					2. 신상에 관한 증명				
(1)					(1) (현행과 같음, 생략)				
(2) 무적자 사실 확인원	1통	1,100원			(2) <삭제>				
(3)~(5)					(3)~(5) (현행과 같음, 생략)				
3. ~ 10.					3. ~ 10. (현행과 같음, 생략)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2. 일반행정 관계				
(1) 인감(개인)의 신고	1건	600원			(1) <삭제>				
(2)~(7)					(2)~(7) (현행과 같음, 생략)				
2. ~ 11.					2. ~ 11. (현행과 같음, 생략)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관련)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 사본(종이출력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 (현행과 같음, 생략)
필름 ·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사진필름의 복제 ○ 사진필름의 인화	필름 · 테이프 등		○ (현행과 같음, 생략) ○ (현행과 같음, 생략) ○ (현행과 같음, 생략) ○ (현행과 같음, 생략)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사본(종이출력물)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슬라이드의 복제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현행과 같음, 생략) ○ (현행과 같음, 생략) ○ (현행과 같음, 생략)
전자파일		○ 사본(종이출력물) ○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복제	전자파일		○ (현행과 같음, 생략) ○ (현행과 같음, 생략)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 (문서 · 도면 · 사진 등) - (현행과 같음, 생략) - (현행과 같음, 생략) ○ (현행과 같음, 생략)
< 비교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비교 > 1. (현행과 같음, 생략) 2. (현행과 같음, 생략) 3. (현행과 같음, 생략)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47호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법 제38조제4항제2호”를 “법 제38조제4항제1호”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 ----- ----- -- 2021년 12월 31일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삭 제 >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삭 제 >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삭 제 >
4. 이륜자동차	< 삭 제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 1호에 ----- ----- -----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75	< 삭제 >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50	< 삭제 >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 ----- ----- ----- 2021년 12월 31일 ----- ----- -----2021년 12월 31일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 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 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 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 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u>2018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제8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 ----- ----- ----- ----- ----- ----- <u>2021년 12월 31일</u> -----.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48호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를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 「지방재정법」 제77조”를 “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 「지방재정법」 제77조제3항”을 “ 「지방회계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목포시 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32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방회계법」 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방회계법」 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7점)로 평가 - 고정여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 대손충당금적립률 (건전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 실험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으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감사기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0) 6 4 (22) 7 7 6 2	
		18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마. 삭제 ※ 추가배점 불가	(6) (5) (4) (3) 삭제	
		20	
3. 지역주민이용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기업 및 가계자금 대출실적	(5) (6) (7) (2)	
		21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 업무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세정정보센터운영 능력 및 계획	(5) (7) (7) (2)	
		9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5) (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목포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금고”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 ⑥ (생략)	제2조(정의) ----- -----. ① ----- ----- ----- ----- ----- ---- 「지방회계법」 제38조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조(금고의 지정) ① (생략)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구분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생략)	제3조(금고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지방회계법」 제38조제3항----- ----- -----.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지정 절차) ① 「시장은 금고 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을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완료 90일 전까지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은행법」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목포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에 한함)에 통보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별표 1] 목포시 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제4조 관련)	제11조(지정 절차) ① ----- ----- ----- ----- -----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 -----.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목포시 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제4조 관련)																						
<table><tr><th>항목</th><th>세부항목</th><th>배점</th><th>비고</th></tr><tr><td rowspan="2">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td><td>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생략) ※ 「지방재정법」 제77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td><td>(10)</td><td></td></tr><tr><td>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생략) ※ 「지방재정법」 제77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7점)로 평가 - (생략)</td><td>(2)</td><td></td></tr></table>	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생략) ※ 「지방재정법」 제77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생략) ※ 「지방재정법」 제77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7점)로 평가 - (생략)	(2)		<table><tr><th>항목</th><th>세부항목</th><th>배점</th><th>비고</th></tr><tr><td rowspan="2">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td><td>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생략) ※ 「지방회계법」 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td><td>(10)</td><td></td></tr><tr><td>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생략) ※ 「지방회계법」 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7점)로 평가 - (생략)</td><td>(2)</td><td></td></tr></table>	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생략) ※ 「지방회계법」 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생략) ※ 「지방회계법」 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7점)로 평가 - (생략)	(2)	
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생략) ※ 「지방재정법」 제77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생략) ※ 「지방재정법」 제77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7점)로 평가 - (생략)	(2)																					
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생략) ※ 「지방회계법」 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생략) ※ 「지방회계법」 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7점)로 평가 - (생략)	(2)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49호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시티투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포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라 함은 목포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탑승료”라 함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미취학”은 만 7세 이하를 말한다.
5. “경로자”는 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6. “단체”란 단체 인솔자에 따라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티투어 운영) 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티투어 운영시간은 09:00 ~ 22:00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을 할 수 있다.

④ 태풍,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한다.

제4조(탑승료 징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티투어 버스 탑승료는 사전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에 의하여 이용일부터 1일전까지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계좌입금에 의한 탑승료 징수가 곤란한 경우 시티투어 이용 당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탑승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탑승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한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4. 시를 홍보할 목적으로 탑승하는 사람
5.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탑승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조자 1인 추가 감면)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의 경우는 보조자 1인 추가 감면)
3. 목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
4. “내일로, 바다로”이용객
5. 20인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하는 사람

제6조(탑승료의 환불) 시티투어 예약을 취소한 경우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취소 확인된 자는 탑승료 전액을, 당일 탑승전 취소한 자는 탑승료의 5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당일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광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준수사항을 어기고 음주, 소란 등 시티투어 운행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하차시킬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 중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도모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티투어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료 납부방법, 수탁자의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시티투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4조의 시티투어 버스 탑승료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티투어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 운송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 운송사업자의 운영기간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50호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를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4. “상점가란”----- <u>50</u> 개 이상-----	제2조(정의) 4. “상점가란”----- <u>30</u> 개 이상-----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51호

목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중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

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운영 등)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사업 등의 인력을 활용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등) 시장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

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52호

목포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

제1조(목적)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락한 생활환경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환경측정장비”란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들에 대하여 안전도나 오염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들을 말한다.
2. “대여센터”란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생활환경측정장비 대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들이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측정장비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생활환경측정장비 구매를 위해서 지역별로 수요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주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대여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및 지역상황에 따라 비치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1.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2.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3.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환경측정장비

② 시장은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동의시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
2. 생활환경측정장비에 대한 파손 등에 대한 책임사항
3.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측정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및 행정청의 책임 여부
4. 본인확인 및 대여 이력확인을 위한 성명·생년월일 등 기본 개인정보

③ 시장은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기능·외관 등에 하자가 없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반납하는 경우에도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대여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대여의 절차 등) ①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대여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순서에 따라 대여한다.

② 대여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③ 대여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환경측정장비의 가액 등에 따라 1회 5천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대여센터의 운영 및 대여의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대여자의 의무 등) ①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한 자(이하“대여자”라 한다)는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여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대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여자에 대하여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한 대여기간을 위반한 경우
2. 생활환경측정장비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경우
3. 허위사실이나 기망의 방법으로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한 경우

제8조(대여결과의 정리 및 반영) ① 시장은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비치된 장부에 기록을 하고, 1년 단위로 지역별 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여센터 별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이전하여 주민들이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53호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마이스(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gress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7.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모바일 앱”이라 한다)이란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모든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8.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19조를 삭제하고,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및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며, 제13조, 제14조,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마이스산업 유치 및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국제·국내회의 주관 단체가 관내에 회의를 유치·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이스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 마이스관광객 체류 활성화 사업, 마이스카드 개발 및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민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휴양콘도미니엄 등록) 휴양콘도미니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 중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모바일 앱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에게 관광지·문화유적지·설화·스토리텔링·지역정보·지역축제·교통·숙박·음식점·지도 등 정보 제공을 위하여 모바일 앱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② 모바일 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념품, 상품권, 상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모바일앱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모바일 앱 이용대상자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시민으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4조) 중 “제13조”를 “제17조(보조금 등)”으로 하고 “보조금으로”를 “보조금 등으로”으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5조) 중 “제14조”를 “제18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 제17조”로 한다.

제16조 앞에 “제4장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을 삭제한다.

제19조 앞에 “제5장 업무의위탁 등”을 삭제한다.

제19조 앞에 “제4장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을 삽입한다.

제21조 앞에 “제6장 관광협의회”을 삭제한다.

제22조 앞에 “제5장 업무의위탁 등”을 삽입한다.

제6장(제2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을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4조 앞에 “제6장 관광협의회”를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 <u>마이스(MICE)산업</u> ”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u><신 설></u>	7. “ <u>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u> ”(이하 “ <u>모바일 앱</u> ”이라 한다)이란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모든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u><신 설></u>	8. “ <u>휴양콘도미니엄업</u> ”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u><신 설></u>	제13조(마이스산업 유치 및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국제·국내 회의 주관 단체가 관내에 회의를 유치·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 (생 략) 제14조(보조금) 시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은 <u>보조금</u>으로 지원한다. 제15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u>마이스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 마이스관광객 체류 활성화 사업, 마이스카드 개발 및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민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u> 제14조(휴양콘도미니엄 등록) 휴양콘도미니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 중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7조(보조금 등) ----- -- 제17조(보조금 등)----- -----<u>보조금</u> 등으로----- -----. 제18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 제18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 제17조-----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삭 제>
<신 설>	제16조(모바일 앱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에게 관광지·문화유적지·설화·스토리텔링·지역정보·지역축제·교통·숙박·음식점·지도 등 정보 제공을 위하여 모바일 앱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② 모바일 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념품, 상품권, 상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모바일앱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모바일 앱 이용대상자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시민으로 한다.
<신 설>	제4장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제16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7조·제18조 (생 략)	제20조·제21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
제5장 업무의위탁 등	<삭 제>
제1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	<삭 제>
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	
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	
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	
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0조</u> (생 략) <u>제6장 관광협의회</u> <u><신 설></u> <u><신 설></u>	<u>제23조</u> (현행 제20조와 같음) <u><삭 제></u> <u>제5장 업무의위탁 등</u> <u>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u> <u>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u> <u>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u> <u>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u> <u>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u> <u>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u> <u>위탁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위탁을 위해서는 경</u> <u>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u> <u>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u> <u>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u> <u>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u> <u>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심의</u> <u>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u> <u>제6장 관광협의회</u>
<u>제21조 · 제22조</u> (생 략) <u>제23조 · 제24조</u> (생 략)	<u>제24조 · 제25조</u> (현행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음) <u>제26조 · 제27조</u> (현행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54호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목포 이순신 수군문화축제”를 “목포 유달산 봄 축제 등 계절 축제”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관광경제국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해양항만과장”을 “관광경제국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해양항만과장, 수산진흥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기능) ①위원회에서 관할 하는 축제는 다음과 같다. 1. <u>목포 이순신 수군문화축제</u> 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조 (기능) ①----- -----. 1. <u>목포 유달산 봄 축제 등 계절 축제</u>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 (구성)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 직 위원은 관광경제국장, 관광 과장, 문화예술과장, <u>해양항만 과장</u>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다. 1. ~ 5. (생 략) ③ (생 략)	제3조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해양항만과 장, 수산진흥과장</u> ----- ----- ----- -----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55호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 및 기타 진동·충격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내진설계 건축물”(이하 “내진 건축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법」 제4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내력을 가진 건축물
2. 「건축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91조의3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확인 및 협력을 마친 건축물

제3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부여)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읍·면·동별 사용승인 연월일 순으로 부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전자기록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의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한다.

제4조(표지판 부착)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부여된 건축물 관리번호가 포함된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해당 건물에 부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5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취소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및 감리를 받은 경우
2.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번호가 취소된 경우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내진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황을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8조에 따라 공동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 된 내진 건축물에 대하여는 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신청 접수순에 의하여 부여한다.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56호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 “주민협의체”란 5인 이상의 주민이 상호간 대등한 관계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시행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로서 해당 지역에서 발굴 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지역별 해당 주민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 1개소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 등을 시의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체는 필요에 따라 분야별 (소)주민협의체를 둘 수 있다.

<신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u><신 설></u> 1. “주민협의체”란 5인 이상의 주민이 상호간 대등한 관계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시행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로서 해당 지역에서 발굴 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목포시(이사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5인 이상의 주민이 상호간 대등한 관계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시행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로서 해당 지역에서 발굴 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u>지역 주민</u>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u>통합 주민협의체 1개소가</u>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u>주민협의체의</u>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예산을 지원받은 <u>통합주민협의체는</u>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 등을 시의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신 설>	제19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u>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 지역별 해당 주민</u>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u>주민협의체가</u>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 <u>1개소</u>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예산을 지원받은 <u>주민협의체는</u>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 등을 시의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체는 필요에 따라 분야별 (소)주민협의체를 둘 수 있다.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57호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세기 개항기부터 해방 이후까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고, 이를 역사 및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이란 역사문화유산의 개별적 가치와 함께 집합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리 삶과 연결되어 계속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세대에게 유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718호(이하 “등록문화재”라 한다)로 등록된 지역을 말한다.
2. “근대건축문화유산”이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립된 후 50년 지난 것으로서 역사적·건축사적·산업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제6조에 따라 등재된 것을 말한다.
3. “근대건축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란 근대건축문화유산·가로변 건물·경관시설물 등의 설치 및 외관 개선·마을길 조성, 폐가 정비 등을 통하여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경관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
4.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나.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
 다.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의 소유자 등

제3조(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역사적 가치를 목포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등록문화재와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은 해당 건축물 및 시설물의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목포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목포시가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등 관리 계획
2. 등록문화재 원형보존기반 정비사업 계획
3.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역사문화 주요거리 및 등록지역 주변 경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등록 및 보전사업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문화·관광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관리·보호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5조(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 ①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제12조의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외관과 규모 및 용도 등 경관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2. 근대건축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지원대상과 구체적 지원조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관리지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근대건축문화유산의 등재 등) ① 시장은 제12조의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대건축문화유산을 등재할 수 있다.

②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의 소유자 등이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등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등재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재된 근대건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근대건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소유자 등과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근대건축문화유산의 표지) ① 근대건축문화유산에 대하여는 근대건축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표지 방법 및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근대건축문화유산의 등재 해제) ① 시장은 근대건축문화유산이 훼손 등으로 역사적·건축사적·산업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없게 되는 경우 그 등재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등재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점검 및 자료수집 등) ① 시장은 매년 관계 공무원에게 근대건축문화유

산의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점검된 내용을 포함한 근대건축문화유산에 관한 자료를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정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등재와 관리내용에 대해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활용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주민협의체 육성 및 지원 등) ① 주민은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대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육성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 등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수립
2.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등재 및 해제
3.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4.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범위·지원대상·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제2호의 심의를 하는 때에는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는 시장이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목포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역사·건축·도시계획·관광분야·사회학·인류학·도시재생·공간디자인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목포근대건축문화유산 또는 근대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 및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7조(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지원센터 인력은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정비계획 수립 지원 및 사업 추진 지원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목포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지원

제20조(지원대상 등) ① 대상지역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원대상은 등록문화재와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 한다.

- ② 근대건축문화유산이 아닌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일지라도 경관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원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사업확정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목포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 3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 ④ 지원대상 선정 시 필요할 경우 제11조에 따른 주민협의체를 참여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등록문화재의 보수·정비사업
- 2. 근대건축문화유산, 근대건축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전은 고증 및 학술조사를 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지원 신청)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1. 신청인의 주소, 성명
 -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 3. 원형복원을 위한 고증 자료(사진, 도면, 설계도 등을 말한다)와 학술조사 자료
 - 4. 건축물 및 토지대장, 건축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3조(지원 결정 등)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정비계획과 제5조의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의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2항의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재산 처분 승인의 요건) 제2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제공대상물 감정평가액에서 공적자금과 기담보 설정액을 제외한 잔액범위 한도
2. 대여의 경우 그로 인한 효용 증가부분에 대한 환수가 필요할 경우를 위하여 시장 승인 후 관리
3. 양도, 교환의 경우 지원받은 자가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사를 착수한 이후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제25조(사후관리 및 점검)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지원 대장을 작성하고 지원 현황 및 용도변경 등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구조 및 용도변경) 제2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2.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제27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지원받은 대상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권자가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존 소유자 등은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 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4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28조(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 전액 혹은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1.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나 설치에 착수하는데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3. 지급조건을 위반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제20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자격조건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제24조에 의한 제한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고증자료 및 학술자료가 충분치 않아 원형복원이 불가할 경우
7. 지원 받은 건축물을 시장에게 매수청구 하는 경우(공익사업시행으로 매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소유자 등이 임의로 철거·멸실·용도변경을 하거나, 지원 조건 등을 위반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을 조치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의 환수 또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하고자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중복지원 금지) ① 제23조에 따라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에게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다.

제30조(우수 근대건축자산의 매입) ①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 등을 매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매입대상 기준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등록문화재가 우선 구입대상이 되며, 우수 근대건축문화유산과 경관을 훼손시키는 건축물 순으로 매입한다.
- ③ 제1항의 매입에 관하여는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 ④ 매입대상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판제작 표지(제7조 관련)

동판제작(스탠드형)	동판제작(부착형)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등재 신청서

건 조 물 명 (건 물 대 장)		위	치	
대 지 면 적	m ²	건 축 면 적 (건 축 연 면 적)	(	m ² m ²)
건 물 유 형		건 물 구 조		
건 물 용 도		건 물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건 축 연 도		건 축 가		
소 유 자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남/여)	
소 유 자 주 소		전 화 번 호		
건 축 물 현 황				
건 축 물 특 성				
신 청 사 유 (보 존 가 치)	-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등재 신청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인)

목포시장 귀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다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해 주십시오.

◎ 기본(필수) 동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 지정을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에 해당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의 확인과 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2. 개인정보 수집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정 신청서: 지정 신청서에 기록된 정보는 5년간 보유한 후 폐기처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지정신청서 접수·등록 불가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 동의 항목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담당자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목포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지정번호			지정일시	년 월 일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남/여)		
	주 소	(전화번호)				
근대건조물 개요	대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건폐율			용적률	%	
	구 조			최고높이	m	
	건립시기					
	건조물연혁					
	금 회 수리내역					
	소요금액	총 수리비용			원	
			원			
			원			
설계자 (건축신고, 건축허가의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비 고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근대건축문화유산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현황사진, 수리가 필요한 근대건축문화유산 부분 사진 3. 설계서, 공정표, 공사비산정내역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 등 수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4.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정함)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다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해 주십시오.

◎ 기본(필수) 동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별 보조금 지원범위를 포함한 보조금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에 해당 건조물의 소유자의 확인과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2. 개인정보 수집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신청서: 지원 신청서에 기록된 정보는 5년간 보유한 후 폐기처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지원신청서 접수·등록 불가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 동의 항목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담당자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목포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권리 · 의무 승계서					
승계대상	위 치			용 도	
	수 량	(동, 개)		면적(규격)	(㎡, m)
지원현황	지원구분	주거환경 개선사업	근대건축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수선 ☐ 대수선	
			근대건축양식	☐ 신축 ☐ 증축 ☐ 개축 ☐ 수선 ☐ 수선 ☐ 대수선	
		가로경관개선사업		☐ 담장 ☐ 대문 ☐ 가로경관 건축물 ☐ 간판시설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일	
권리 의무 승계	기존 소유권자(인계자)			새로운 소유권자(인수자)	
	성 명	(인) (전화:)		(인) (전화:)	
	생년월일				
	주 소				
	내 용	소유권 변경에 따라 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인지하고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 · 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붙임서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5호서식]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 관리대장

관리 번호				
명 칭	한글		한자	
	영문			
분 야		재 료		
구 조				
규격/크기				
수량/면적		년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소 유 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관리단체(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내 용 (연혁, 유래, 전설)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일자	내용		

() 실 측 도

() 위 치 도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58호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 본문 중 “6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2회”를 “동일한
안전의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회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 3(안전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 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9조의 3(안전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 ----- <u>30일</u> ----- -----, ----- <u>동일한 안전의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를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u> -----. ----- -----.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1760호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1761호

목포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104조제1항,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 1> (생 략)	제1조(목적)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 ----- ----- ----- ----- --. <별표 1> 개정 세부내역 별도 붙임.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1762호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조례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수수료의 지원범위는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자본유치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지원용지에 대한 자본유치도 포함)

제3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공무원은 그 공헌도에 따라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하거나, 실적가점, 특별호봉승급 및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 앞면 〉

성과급 지급 기준(안)(제32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비고
지급 대상	• 민간인 및 공무원 • 기관, 단체			
지 급 금 액	유치금액	지급비율	지급액	
	미화 10,000,000달러 미만 (120억원 미만)	10,000분의 30	미화 30,000달러 미만 (36,000천원 미만)	
	미화 10,000,000 달러~ 미화 50,000,000달러 미만 (600억원 미만)	10,000분의 24	미화 120,000달러 미만 (144,000천원 미만)	
	미화 50,000,000달러~ 미화 100,000,000달러 미만 (1,200억원 미만)	10,000분의 18	미화 180,000달러 미만 (216,000천원 미만)	
	미화 100,000,000달러 이상 (1,200억원 이상)	10,000분의 12	미화 498,000달러 미만 (600,000천원 미만)	
차 등 적 용 기 준	적용율	적 용 내 용		
	100%	•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70%	•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0%	• 투자가 발굴, 부지물색, 금융알선 등 1개월 이상 유치활동		
	30%	•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기관·단체 또는 해당부서로 이관 추진 등 1회성 유치활동		
	제 외	• 단순히 안내·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 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기타	• 유치 금액 : 당해 연도 투자금액(다만 연차적 투자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			

〈 뒷면 〉

기업 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기준(안)(제32조제1항 관련)

포상종류	공 적 내 용
특 별 승 진 (6급 이하)	투자유치금액 150억원 이상
특별호봉승급 (6급 이하)	투자유치금액 50억원 ~ 150억원 미만
전보우대 (5급 이하)	투자유치금액 20억원 ~ 50억원 미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 ② (생 략) ③ <신 설>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조례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수수료의 지원범위는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 로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자본유치 실적보상)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자본유치에 대한 성 과급 지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 ③ (생 략) ④ <신 설>	제32조(자본유치 실적보상) ① ----- ----- 따른 ----- ----- -----. (지원용지에 대한 자본유치 도 포함)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공무원은 그 공헌도에 따라 희 망부서에 우선 배치하거나, 실적가 점, 특별호봉승급 및 특별승진 등 인 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4] <앞면> 성과급 지급 기준 (제32조제1항 관련)				[별표 4] <앞면> 성과급 지급 기준 (제32조제1항 관련)					
구분	기 준			비고	구분	기 준			비고
지급대상	• 민간인 및 공무원 • 기관, 단체				지급대상	• 민간인 및 공무원 • 기관, 단체			
지급금액	유치금액	지급비율	지급액		지급금액	유치금액	지급비율	지급액	
	미화 10,000,000달러 미만 (120억원 미만)	10,000분의 30	미화 30,000달러 미만 (36,000천원 미만)			미화 10,000,000달러 미만 (120억원 미만)	10,000분의 30	미화 30,000달러 미만 (36,000천원 미만)	
	미화 10,000,000달러~미화 50,000,000달러 미만 (600억원 미만)	10,000분의 24	미화 120,000달러 미만 (144,000천원 미만)			미화 10,000,000달러~미화 50,000,000달러 미만 (600억원 미만)	10,000분의 24	미화 120,000달러 미만 (144,000천원 미만)	
	미화 50,000,000달러~미화 100,000,000달러 미만 (1,200억원 미만)	10,000분의 18	미화 180,000달러 미만 (216,000천원 미만)			미화 50,000,000달러~미화 100,000,000달러 미만 (1,200억원 미만)	10,000분의 18	미화 180,000달러 미만 (216,000천원 미만)	
	미화 100,000,000달러 이상 (1,200억원 이상)	10,000분의 12	미화 498,000달러 미만 (600,000천원 미만)			미화 100,000,000달러 이상 (1,200억원 이상)	10,000분의 12	미화 498,000달러 미만 (600,000천원 미만)	
차등적용기준	적용율	적 용 내 용			차등적용기준	적용율	적 용 내 용		
	100%	•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 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	•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70%	•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해당 부서에서 공동 추진				70%	•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0%	• 투자가 발굴, 정보 입수 후 다른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				50%	• 투자가 발굴, 부지물색, 금융알선 등 1개월 이상 유치활동		
	30%	• 정보제공				30%	•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기관·단체 또는 해당부서로 이관 추진 등 1회성 유치활동		
기타	• 유치 금액 : 당해연도 투자금액(다만 연차적 투자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				기타	• 유치 금액 : 당해 연도 투자금액(다만 연차적 투자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뒷면> 기업 유치 유공공무원 포상 기준(제32조제1항 관련)			<뒷면> 기업 유치 유공공무원 포상 기준(제32조제1항 관련)		
포상 종류	공 적 내 용	비 고	포상종류	공 적 내 용	
특 별 승 진	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2개소 이상) ② 외국인 투자금액 유치(1억불 이상) ③ 민자사업유치(1,000억원 이상, 2개소 이상) ④ 대기업 유치(1개소 이상) ⑤ 중소기업 유치(10개소 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	①~⑤항 공적 중 1개 이상 해당사항 있을 경우	특 별 승 진 (6급 이하)	투자유치금액 150억원 이상	
전보 우대 인사	① 민자사업유치(500억원 이상, 1개소 이상) ② 중소기업 유치(2개소 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	①~②항 공적 중 1개 이상 해당사항 있을 경우	특별호봉승급 (6급 이하)	투자유치금액 50억원 ~ 150억원 미만	
표창 및 성과 상여 금 우선 지급	① 민자사업유치(200억원 이상, 1개소 이상) ② 중소기업 유치(1개소 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	①~②항 공적 중 1개 이상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전보우대 (5급 이하)	투자유치금액 20억원 ~ 50억원 미만	

[별지 제18호 서식] <신 설>

[별지 제18호 서식]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번호 (영인번호)		{ }				
소재지	주소		전화 :						
담당자	직책		전화 :		Email :				
영종 (한국표준 산업분류표)	생산품	창시 종업원수	명	연간매출액	백만원				
이전 또는 신청일부			□ 공장(□ 전부, □ 일부) □ 분사 □ 연구소 □ 기타()						
이전 또는 신청일 전(前) 소재지			이전 또는 신청일 후(後) 소재지						
분양가격(원)		원		기업부분		□ 대 □ 중전 □ 중소			
부지 면적(m²)		공장용지면적(m²)		건축연면적(m²)					
소유권 이전일		건축허가일		투자완료 (예정)일					
구 분		교부일자	보증금	보험가입액	보험기간	비 고			
입 지 보 조 금		천원		천원					
시설투자보조금		천원		천원					
수수료 지 원	계	도비	시비	자부담					
	원	원	원	원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28조제2항 및 같은조제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첨부 1.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건축허가서 및 하중 신고서 1부. 3.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									

목포시 시립국악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1763호

목포시 시립국악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시립국악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⑥국악원 단원이 목포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근무시간 외 공연에 참여할 경우 [별표 5]에 의한 공연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 및 신설규정[별표5]은 2019. 4. 1.부터 적용한다.

[별표 2]

교수 및 강사 실비보상 기준

(단위 : 원)

구 분	계	기본수당	직책수당	연구수당	예능수당	정액급식비
원 감	1,542,000	1,073,600	127,900	64,000	176,500	100,000
교 수	1,414,100	1,073,600		64,000	176,500	100,000
강 사	1,169,700	893,200			176,500	100,000

[별표 5] <신설>

공연수당

단체명	공연수당	비 고
목포시립국악원	30,000원	1회 당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실비보상) ⑥ <신설>	제6조(실비보상) ⑥ 국악원 단원이 목포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근무시간 외 공연에 참여할 경우 [별표5]에 의한 공연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교수 및 강사 실비보상 기준 (단위 : 원) <table><tr><th>구분</th><th>계</th><th>기본수당</th><th>직책수당</th><th>연구수당</th><th>예능수당</th><th>정액급식비</th></tr><tr><td>원감</td><td>1,523,000</td><td>1,054,600</td><td>127,900</td><td>64,000</td><td>176,500</td><td>100,000</td></tr><tr><td>교수</td><td>1,395,100</td><td>1,054,600</td><td></td><td>64,000</td><td>176,500</td><td>100,000</td></tr><tr><td>강사</td><td>1,153,900</td><td>877,400</td><td></td><td></td><td>176,500</td><td>100,000</td></tr></table>	구분	계	기본수당	직책수당	연구수당	예능수당	정액급식비	원감	1,523,000	1,054,600	127,900	64,000	176,500	100,000	교수	1,395,100	1,054,600		64,000	176,500	100,000	강사	1,153,900	877,400			176,500	100,000	[별표 2] 교수 및 강사 실비보상 기준 (단위 : 원) <table><tr><th>구분</th><th>계</th><th>기본수당</th><th>직책수당</th><th>연구수당</th><th>예능수당</th><th>정액급식비</th></tr><tr><td>원감</td><td>1,542,000</td><td>1,073,600</td><td>127,900</td><td>64,000</td><td>176,500</td><td>100,000</td></tr><tr><td>교수</td><td>1,414,100</td><td>1,073,600</td><td></td><td>64,000</td><td>176,500</td><td>100,000</td></tr><tr><td>강사</td><td>1,169,700</td><td>893,200</td><td></td><td></td><td>176,500</td><td>100,000</td></tr></table>	구분	계	기본수당	직책수당	연구수당	예능수당	정액급식비	원감	1,542,000	1,073,600	127,900	64,000	176,500	100,000	교수	1,414,100	1,073,600		64,000	176,500	100,000	강사	1,169,700	893,200			176,500	100,000
구분	계	기본수당	직책수당	연구수당	예능수당	정액급식비																																																			
원감	1,523,000	1,054,600	127,900	64,000	176,500	100,000																																																			
교수	1,395,100	1,054,600		64,000	176,500	100,000																																																			
강사	1,153,900	877,400			176,500	100,000																																																			
구분	계	기본수당	직책수당	연구수당	예능수당	정액급식비																																																			
원감	1,542,000	1,073,600	127,900	64,000	176,500	100,000																																																			
교수	1,414,100	1,073,600		64,000	176,500	100,000																																																			
강사	1,169,700	893,200			176,500	100,000																																																			
[별표 5] <신설>	[별표 5] 공연수당 <table><tr><th>단체명</th><th>공연수당</th><th>비고</th></tr><tr><td>목포시립국악원</td><td>30,000원</td><td>1회 당</td></tr></table>	단체명	공연수당	비고	목포시립국악원	30,000원	1회 당																																																		
단체명	공연수당	비고																																																							
목포시립국악원	30,000원	1회 당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1764호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한다. 또한, 같은조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 (단원의 종류와 정원) 각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장, 지휘자, 안무자, 이외에 단원을 둘 수 있다. 단체의 종류와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 10은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실비보상) ④ 예술단 단원이 목포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근무시간 외 공연에 참여할 경우 [별표 10]에 의한 공연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개정 규정 및 신설규정[별표 10]은 2019. 4. 1.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교향악단 상임단원 월 봉급표

(단위 : 원)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1 - 1	911,600	685,900	225,700	1 - 16	1,575,600	1,224,300	351,300
1 - 2	994,400	754,900	239,500	1 - 17	1,615,000	1,258,500	356,500
1 - 3	1,068,800	816,400	252,400	1 - 18	1,658,400	1,296,800	361,600
1 - 4	1,135,700	870,500	265,200	1 - 19	1,695,300	1,326,800	368,500
1 - 5	1,189,800	912,500	277,300	1 - 20	1,733,800	1,356,600	377,200
1 - 6	1,235,500	947,900	287,600	1 - 21	1,767,800	1,382,100	385,700
1 - 7	1,274,100	976,100	298,000	1 - 22	1,811,400	1,420,500	390,900
1 - 8	1,307,400	1,004,300	303,100	1 - 23	1,849,900	1,450,400	399,500
1 - 9	1,339,700	1,031,400	308,300	1 - 24	1,885,200	1,477,100	408,100
1 - 10	1,375,700	1,058,000	317,700	1 - 25	1,922,600	1,505,900	416,700
1 - 11	1,406,200	1,084,100	322,100	1 - 26	1,959,300	1,535,700	423,600
1 - 12	1,436,500	1,109,500	327,000	1 - 27	1,996,100	1,565,700	430,400
1 - 13	1,467,500	1,135,100	332,400	1 - 28	2,034,700	1,595,600	439,100
1 - 14	1,499,300	1,160,000	339,300	1 - 29	2,071,200	1,625,300	445,900
1 - 15	1,532,100	1,185,900	346,200	1 - 30	2,260,200	1,774,700	485,500

[별표 2]

상임단원 월 봉급표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연극단)

(단위 : 원)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2 - 1	865,600	641,600	224,000	2 - 16	1,272,600	969,500	303,100
2 - 2	904,900	674,800	230,100	2 - 17	1,295,700	985,700	310,000
2 - 3	937,800	702,200	235,600	2 - 18	1,336,800	1,017,800	319,000
2 - 4	975,500	734,400	241,100	2 - 19	1,381,400	1,053,400	328,000
2 - 5	1,012,900	765,800	247,100	2 - 20	1,410,100	1,073,200	336,900
2 - 6	1,040,100	786,900	253,200	2 - 21	1,463,800	1,117,900	345,900
2 - 7	1,066,200	807,900	258,300	2 - 22	1,512,900	1,158,200	354,700
2 - 8	1,090,000	826,400	263,600	2 - 23	1,567,900	1,202,800	365,100
2 - 9	1,113,500	844,900	268,600	2 - 24	1,611,800	1,237,900	373,900
2 - 10	1,137,080	863,180	273,900	2 - 25	1,657,000	1,274,100	382,900
2 - 11	1,161,100	882,100	279,000	2 - 26	1,703,400	1,311,300	392,100
2 - 12	1,182,900	900,400	282,500	2 - 27	1,751,100	1,349,600	401,500
2 - 13	1,206,200	918,600	287,600	2 - 28	1,800,100	1,389,000	411,100
2 - 14	1,233,100	940,400	292,700	2 - 29	1,850,600	1,429,600	421,100
2 - 15	1,251,000	953,000	298,000	2 - 30	1,902,400	1,471,300	431,100

[별표 3]

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월 봉급표

(단위 : 원)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3-1	3,552,300	2,915,100	637,200	3-4	3,749,700	3,053,100	696,600
3-2	3,616,200	2,960,200	656,000	3-5	3,818,700	3,100,600	718,100
3-3	3,682,100	3,006,200	675,900	3-6	3,890,000	3,149,300	740,700

[별표 4]

상임지휘자, 상임안무자, 상임연출자 월 봉급표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연극단)

(단위 : 원)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4-1	2,537,800	2,166,400	371,400	4-4	2,802,700	2,411,400	391,300
4-2	2,622,900	2,245,100	377,800	4-5	2,897,400	2,499,100	398,300
4-3	2,711,300	2,326,900	384,400	4-6	2,995,300	2,590,000	405,300

[별표 8]

단원의 종류와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종 류	정 원
교 향 악 단 (8 0 명)	지 회 자	1 명
	부 지 회 자	1 명
	단 무 장	1 명
	악 장	1 명
	수 석 연 주 자	1 7 명
	차 석 연 주 자	1 4 명
	단 원	4 5 명
무 용 단 (5 0 명)	안 무 자	1 명
	훈 련 장	1 명
	단 원	4 8 명
합 창 단 (8 0 명)	지 회 자	1 명
	부 지 회 자	1 명
	단 무 장	1 명
	반 주 자	1 명
	단 원	7 6 명
소 년 소 녀 합 창 단 (8 0 명)	지 회 자	1 명
	단 무 장	1 명
	안 무 자	1 명
	반 주 자	1 명
	단 원	7 6 명
연 극 단 (3 0 명)	연 출 자	1 명
	단 무 장	1 명
	단 원	2 8 명

[별표 10]

공연수당(제5조 관련)

단체명	공연수당	비 고
목포시립예술단	30,000원	1회 당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4조 (단원의 종류와 정원) 각 예</u> <u>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u> <u>단장, 지휘자, 안무자, 이외의 다음</u> <u>기준 범위 내에서 단원을 둘 수</u> <u>있다.</u> 1. 교향악단 - 부지휘자 1명 - 악장 1명 - 단무장 1명 - 수석연주자 17명 - 차석연주자 14명 - 정단원 28명 - 준단원 22명 - 연구단원 10명 2. 무용단 - 훈련장 1명 - 단원 47명 3. 성인합창단 - 단무장 1명 - 반주자 1명 - 단원 75명 - 부지휘자 1명 4. 소년소녀 합창단 - 단무장 1명 - 반주자 1명 - 안무자 1명 - 단원 75명 5. 연극단 - 연출자 1명 - 단무장 1명 - 단원 30명 <u>제5조(실비보상) ④<신 설></u>	<u>제4조 (단원의 종류와 정원) -----</u> ----- ----- ----- ---. <u>단원의 종류와 정원은 [별표</u> <u>8]과 같다.</u>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u>제5조(실비보상) ④ 예술단 단원이</u> <u>목포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근</u> <u>무시간 외 공연에 참여할 경우</u> <u>[별표10]에 의한 공연수당을 예산</u> <u>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u>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별표 1]							
교향악단 상임단원 월 봉급표								교향악단 상임단원 월 봉급표							
(단위 : 원)								(단위 : 원)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1 - 1	899,500	673,800	225,700	1 - 16	1,554,000	1,202,700	351,300	1 - 1	911,600	685,900	225,700	1 - 16	1,575,600	1,224,300	351,300
1 - 2	981,100	741,600	239,500	1 - 17	1,592,700	1,236,200	356,500	1 - 2	994,400	754,900	239,500	1 - 17	1,615,000	1,258,500	356,500
1 - 3	1,054,400	802,000	252,400	1 - 18	1,635,500	1,273,900	361,600	1 - 3	1,068,800	816,400	252,400	1 - 18	1,658,400	1,296,800	361,600
1 - 4	1,120,300	855,100	265,200	1 - 19	1,671,800	1,303,300	368,500	1 - 4	1,135,700	870,500	265,200	1 - 19	1,695,300	1,326,800	368,500
1 - 5	1,173,700	896,400	277,300	1 - 20	1,709,800	1,332,600	377,200	1 - 5	1,189,800	912,500	277,300	1 - 20	1,733,800	1,356,600	377,200
1 - 6	1,218,700	931,100	287,600	1 - 21	1,743,400	1,357,700	385,700	1 - 6	1,235,500	947,900	287,600	1 - 21	1,767,800	1,382,100	385,700
1 - 7	1,256,800	958,800	298,000	1 - 22	1,786,300	1,395,400	390,900	1 - 7	1,274,100	976,100	298,000	1 - 22	1,811,400	1,420,500	390,900
1 - 8	1,289,600	986,500	303,100	1 - 23	1,824,300	1,424,800	399,500	1 - 8	1,307,400	1,004,300	303,100	1 - 23	1,849,900	1,450,400	399,500
1 - 9	1,321,500	1,013,200	308,300	1 - 24	1,859,100	1,451,000	408,100	1 - 9	1,339,700	1,031,400	308,300	1 - 24	1,885,200	1,477,100	408,100
1 - 10	1,357,000	1,039,300	317,700	1 - 25	1,896,000	1,479,300	416,700	1 - 10	1,375,700	1,058,000	317,700	1 - 25	1,922,600	1,505,900	416,700
1 - 11	1,387,000	1,064,900	322,100	1 - 26	1,932,100	1,508,500	423,600	1 - 11	1,406,200	1,084,100	322,100	1 - 26	1,959,300	1,535,700	423,600
1 - 12	1,416,900	1,089,900	327,000	1 - 27	1,968,400	1,538,000	430,400	1 - 12	1,436,500	1,109,500	327,000	1 - 27	1,996,100	1,565,700	430,400
1 - 13	1,447,400	1,115,000	332,400	1 - 28	2,006,500	1,567,400	439,100	1 - 13	1,467,500	1,135,100	332,400	1 - 28	2,034,700	1,595,600	439,100
1 - 14	1,478,800	1,139,500	339,300	1 - 29	2,042,500	1,596,600	445,900	1 - 14	1,499,300	1,160,000	339,300	1 - 29	2,071,200	1,625,300	445,900
1 - 15	1,511,100	1,164,900	346,200	1 - 30	2,228,800	1,743,300	485,500	1 - 15	1,532,100	1,185,900	346,200	1 - 30	2,260,200	1,774,700	485,500
[별표 2]								[별표 2]							
상임단원 월 봉급표								상임단원 월 봉급표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 연극단)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연극단)							
(단위 : 원)								(단위 : 원)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2 - 1	817,500	593,500	224,000	2 - 16	1,200,000	896,900	303,100	2 - 1	865,600	641,600	224,000	2 - 16	1,272,600	969,500	303,100
2 - 2	854,300	624,200	230,100	2 - 17	1,221,800	911,800	310,000	2 - 2	904,900	674,800	230,100	2 - 17	1,295,700	985,700	310,000
2 - 3	885,200	649,600	235,600	2 - 18	1,250,500	941,500	319,000	2 - 3	937,800	702,200	235,600	2 - 18	1,336,800	1,017,800	319,000
2 - 4	920,500	679,400	241,100	2 - 19	1,302,500	974,500	328,000	2 - 4	975,500	734,400	241,100	2 - 19	1,381,400	1,053,400	328,000
2 - 5	955,500	708,400	247,100	2 - 20	1,329,700	992,800	336,900	2 - 5	1,012,900	765,800	247,100	2 - 20	1,410,100	1,073,200	336,900
2 - 6	981,100	727,900	253,200	2 - 21	1,380,000	1,034,100	345,900	2 - 6	1,040,100	786,900	253,200	2 - 21	1,463,800	1,117,900	345,900
2 - 7	1,005,700	747,400	258,300	2 - 22	1,426,200	1,071,500	354,700	2 - 7	1,066,200	807,900	258,300	2 - 22	1,512,900	1,158,200	354,700
2 - 8	1,028,100	764,500	263,600	2 - 23	1,477,800	1,112,700	365,100	2 - 8	1,090,000	826,400	263,600	2 - 23	1,567,900	1,202,800	365,100
2 - 9	1,050,200	781,600	268,600					2 - 9	1,113,500	844,900	268,600	2 - 24	1,611,800	1,237,900	373,900
2 - 10	1,072,400	798,500	273,900					2 - 10	1,137,080	863,180	273,900	2 - 25	1,657,000	1,274,100	382,900
2 - 11	1,095,000	816,000	279,000					2 - 11	1,161,100	882,100	279,000	2 - 26	1,703,400	1,311,300	392,100
2 - 12	1,115,400	832,900	282,500					2 - 12	1,182,900	900,400	282,500	2 - 27	1,751,100	1,349,600	401,500
2 - 13	1,137,400	849,800	287,600					2 - 13	1,206,200	918,600	287,600	2 - 28	1,800,100	1,389,000	411,100
2 - 14	1,162,600	869,900	292,700					2 - 14	1,233,100	940,400	292,700	2 - 29	1,850,600	1,429,600	421,100
2 - 15	1,179,600	881,600	298,000					2 - 15	1,251,000	953,000	298,000	2 - 30	1,902,400	1,471,300	431,1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3]

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월 봉급표

(단위 : 원)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3-1	3,500,800	2,863,600	637,200	3-4	3,695,700	2,999,100	696,600
3-2	3,563,900	2,907,900	656,000	3-5	3,763,900	3,045,800	718,100
3-3	3,628,900	2,953,000	675,900	3-6	3,834,300	3,093,600	740,700

[별표 4]

상임지휘자, 상임안무자, 상임연출자 월 봉급표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 연극단)

(단위 : 원)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4-1	2,375,500	2,004,100	371,400	4-4	2,622,000	2,230,700	391,300
4-2	2,454,700	2,076,900	377,800	4-5	2,710,100	2,311,800	398,300
4-3	2,536,900	2,152,500	384,400	4-6	2,801,200	2,395,900	405,300

[별표 8] <개 정>

개 정 안

[별표 3]

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월 봉급표

(단위 : 원)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3-1	3,552,300	2,915,100	637,200	3-4	3,749,700	3,053,100	696,600
3-2	3,616,200	2,960,200	656,000	3-5	3,818,700	3,100,600	718,100
3-3	3,682,100	3,006,200	675,900	3-6	3,890,000	3,149,300	740,700

[별표 4]

상임지휘자, 상임안무자, 상임연출자 월 봉급표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연극단)

(단위 : 원)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4-1	2,537,800	2,166,400	371,400	4-4	2,802,700	2,411,400	391,300
4-2	2,622,900	2,245,100	377,800	4-5	2,897,400	2,499,100	398,300
4-3	2,711,300	2,326,900	384,400	4-6	2,995,300	2,590,000	405,300

[별표 8]

단원의 종류와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종 류	정 원
교향악단 (8 0 명)	지휘자	1 명
	부지휘자	1 명
	단무장	1 명
	악장	1 명
	수석연주자	1 7 명
	차석연주자	1 4 명
무용단 (5 0 명)	단원	4 5 명
	안무자	1 명
	혼련장	1 명
합창단 (8 0 명)	단원	4 8 명
	지휘자	1 명
	부지휘자	1 명
	단무장	1 명
	반주자	1 명
소년소녀 합창단 (8 0 명)	단원	7 6 명
	지휘자	1 명
	단무장	1 명
	안무자	1 명
	반주자	1 명
연극단 (3 0 명)	단원	7 6 명
	연출자	1 명
	단무장	1 명
	단원	2 8 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0] <신 설>	[별표 10] 공연수당(제5조 관련) <table><tr><th>단체명</th><th>공연수당</th><th>비 고</th></tr><tr><td>목포시립예술단</td><td>30,000원</td><td>1회 당</td></tr></table>	단체명	공연수당	비 고	목포시립예술단	30,000원	1회 당
단체명	공연수당	비 고					
목포시립예술단	30,000원	1회 당					

목포시 고시 제2018-76호

목포시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 등 조정요령 제4조에 따라 2019년 목포시 택시 요금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1. 시 행 일 : 2019년 4월 20일(토) 00:00부터

2. 택시운임·요금 [중형택시]

구 분		현행요금		변경요금		비고
종 류		적용방법	금 액	적용방법	금 액	
기본운임		2km까지	2,800원	2km까지	3,300원	
이후운임		146m당	100원	134m당	100원	
거리시간 병산운임		15km/h이하시 35초당	100원	15km/h이하시 32초당	100원	
할증·할감	심 야	00:00-04:00	20%	현행과 동일		
	시계외	사업구역 외 운행 (남악신도시 제외)	20%	사업구역 외 운행 (남악신도시 제외)	35%	
	인 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화 물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공휴일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호출시	호출 1회당	1,000원	현행과 동일		

※ 심야할증과 시계외 할증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40%를 넘지 못함

[대형택시]

구 분		현행요금		변경요금		비고
종 류		적용방법	금 액	적용방법	금 액	
기본운임		2km까지	4,200원	2km까지	4,800원	
이후운임		125m당	200원	106m당	200원	
거리시간 병산운임		15km/h이하시 30초당	200원	15km/h이하시 25초당	200원	
할증·할감	심 야	00:00-04:00	20%	현행과 동일		
	시계외	사업구역 외 운행 (남악신도시 제외)	20%	사업구역 외 운행 (남악신도시 제외)	35%	
	인 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화 물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공휴일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호출시	호출 1회당	1,000원	현행과 동일		

※ 심야할증과 시계외 할증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40%를 넘지 못함

3. 적용지역 : 목포시 전지역

4. 적용대상 : 목포시 사업용 일반·개인택시

5. 요금적용방법

가. 거리·시간 운임

○ 거리요금 : 기본거리 2km초과 후 주행거리에 따라 요금 적용

○ 시간요금 : 15km/h 이하 주행시 소요시간에 따라 요금 적용

나. 심야할증 : 00:00~04:00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20% 할증 적용

다. 시계외(남악신도시 제외) 할증 : 승차지점부터 35% 적용

※ 단, 2km까지 기본운임은 할증하지 않으며 2km이후 할증되는 요금부터 35% 적용

목포시 고시 제2019-77호

목포 삼진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18-28호(2018. 3. 15)호로 고시한 목포 삼진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의2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목포 삼진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목포시장, 중소기업진흥공단, 목포조선공업(주)

3. 산업단지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도시환경저해를 초래하는 기존의 공장들을 산단 내로 수용함으로써 집적 이익 도모 및 도시 내 토지효율성 제고.
- 선박건조를 위한 조선소 건설, 조선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나. 사업개요(변경없음)

(1)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 민간개발

(2)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 금속가공 제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3)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단위:m²)

구분	계	장	도	공원	잡	공유수면 (매립)
기정	217,770.0	173,440.4	25,707.7	3,760.6	9,367.9	5,493.4

(4) 토지 이용 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비고
	전체	기 준공	공유수면 매립	
합 계	217,770.0	212,276.6	5493.4	목포조선공업(주)
산 업 시 설 용 지	167,346.4	161,853.0	5493.4	
공 장 용 지	167,346.4	161,853.0	5493.4	
지 원 시 설 용 지	10,788.9	10,788.9		
공 동 시 설 부 지	9,619.7	9,619.7		
생활체육 시설부지	361.8	361.8		
가 압 장	807.4	807.4		
녹지용지	13,975.1	13,975.1		
경관녹지	10,214.5	10,214.5		
공원녹지	3,760.6	3,760.6		
공공시설용지	25,659.6	25,659.6		
도 로	24,013.4	24,013.4		
주 차 장	1,646.2	1,646.2		

(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도 로

- 도로총괄표(변경없음)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5	1,297	24,013.4	3	946	19,481.4	-	-	-	2	351	4,532.0
종로	5	1,297	24,013.4	3	946	19,481.4	-	-	-	2	351	4,532.0

- 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면적(㎡)	기점	종점
종로	1	14	20	98	2,149.6	지구계	공장부지 입구
종로	1	43	20	479	9,765.0	중1-14	지구계
종로	1	27	20	369	7,566.8	중1-14	지구계
종로	3	37	12	213	2,716.0	중1-43	해안선
종로	3	38	12	138	1,816.0	중1-27	해안선

○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 용수공급량

(단위 : m³)

구분	계	공업용수	생활용수
사업지구	963	849	114

- 용수공급원

구 분	공 급	비 고
공급원	목포 지방상수도	963t/일, 200m/m

○ 오·폐수처리(변경없음)

(단위 : m³/일)

구분	계	오수량	폐수량	비고
계	199.924	111.72	88.204	
공 장 용 지	195.924	107.72	88.204	
지원시설용지	4	4	-	

○ 공원, 녹지시설(변경없음)

구 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계				13,975.1		
기정	녹지	경관녹지	목포시 연산동 1282장 일원	498.0		
기정	녹지	완충녹지	목포시 연산동 1283-1잡 일원	9,411.5		
기정	녹지	완충녹지	목포시 연산동 1287장 일원	305		
기정	공원	근린공원	목포시 연산동 1298장 일원	3,760.6		

○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전력사용량(MWh)	최대부하(kW)
계	13,939	2,540
공 장 용 지	13,383	2,451
지원시설용지	556	89

○ 통신시설(변경없음)

- 여유율 30%를 고려하여 100회선을 한국통신 목포 지사에서 전량 공급

구분	종사인구(인)	산정기준	총소요대수(회선)	비고
계	926		100	
공장용	896	1대/10인	90	
지원시설용	30	1대/3인	10	

○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구 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1,646.2	-	
기정	노외주차장	목포시 연산동 1284장 일원	823.1	-	
기정	노외주차장	목포시 연산동 1282장 일원	823.1	-	

○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 진입도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점	종점	관리처분 사 항
중로	1	14	20	416	8,467	대로1-6	산단지구계	목포시에 귀 속

4. 사업자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1282번지 일원.

나. 면 적

○ 217,770.0㎡[공유수면 매립확장 5,493.4㎡]

5. 사업 시행기간(변경)

가. 개발기간(변경-목포조선공업 부지확장에 한함)

○ 기 정 : 1995. 12 ~ 2018. 12(공유수면매립 : 2012~2018)

○ 변 경 : 1995. 12 ~ 2019. 12(공유수면매립 : 2012~2019)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1) 목포 삼진일반산업단지 용도지역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17,770.0	100.0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217,770.0	100.0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번호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1	20	삼진지구 단위계획구역	목포시 연산동 1282번지 일원	217,770.0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변경없음)

○ 도로 결정 총괄조서(변경없음)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5	1,713.0	32,480.4	3	1,362	27,948.4	-	-	-	2	351	4,532.0
중로	5	1,713.0	32,480.4	3	1,362	27,948.4	-	-	-	2	351	4,532.0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5개 노선			1,713.0	32,480.4				-	-	
기정	중로	1	14	20	514.0	10,616.6	지구계	공장입구	도로	-	-	
기정	중로	1	43	20	479.0	9,765.0	중로1-14	지구계	도로	-	-	
기정	중로	1	27	20	369.0	7,566.8	중로1-14	지구계	도로	-	-	
기정	중로	3	38	12	138.0	1,816.0	중로1-27	해안선	도로	-	-	
기정	중로	3	37	12	213.0	2,716.0	중로1-43	해안선	도로	-	-	

(2) 공간시설(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2	녹지	완충 녹지	목포시 연산동 1283-1잡 일원	5,411	-	-		삼진일반 산업단지
기정	13	녹지	완충 녹지	목포시 연산동 1299잡 일원	3,992	-	-		삼진일반 산업단지
기정	14	녹지	완충 녹지	목포시 연산동 1287장 일원	305	-	-		삼진일반 산업단지

○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9	삼 진	근린 공원	목포시 연산동 1298장 일원	3,830	-	-		삼진일반 산업단지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계획총괄(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217,770.0	목포시 연산동 일원	217,770.0	
-	소계		167,346.4		167,346.4	
	A	1	138,477.2	목포시 연산동 1282장 일원	138,477.2	공장용지
		2	26,434.1	목포시 연산동 1297장 일원	26,434.1	공장용지
		3	2,435.1	목포시 연산동 1280-12장 일원	2,435.1	공장용지
-	소계		9,619.7		9,619.7	
	B	1	7,173.7	목포시 연산동 1300장 일원	7,173.7	공동시설
		2	314.6	목포시 연산동 1284장	314.6	공동시설
		3	389.5	목포시 연산동 1284장	389.5	공동시설
		4	1,380.1	목포시 연산동 1282장	1,380.1	공동시설
-	C		807.4	목포시 연산동 1289장	807.4	가압장
-	D		361.8	목포시 연산동 1284장	361.8	생활체육시설
-	E		3,760.6	목포시 연산동 1298장	3,760.6	공원
-	소계		10,214.5		10,214.5	
	F	1	1,214.5	목포시 연산동 1290잡	1,214.5	녹지
		2	801.2	목포시 연산동 1302잡	801.2	녹지
		3	796.9	목포시 연산동 1288잡	796.9	녹지
		4	2,110.3	목포시 연산동 1283-1잡	2,110.3	녹지
		5	498	목포시 연산동 1282장	498	녹지
		6	2,179.8	목포시 연산동 1299잡	2,179.8	녹지
		7	2,308.8	목포시 연산동 1283-2잡	2,308.8	녹지
		8	305	목포시 연산동 1287장	305	녹지
-	소계		1,646.2		1,646.2	
	G		823.1	목포시 연산동 1284장	823.1	주차장
			823.1	목포시 연산동 1282장	823.1	주차장
-	H		24,013.4	목포시 연산동 1303도	24,013.4	도로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	A	용도	◦ 권장용도 : 건축법 제2조 2항 제17호의 공장 ◦ 불허용도 : 권장용도 외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도면참조	
		형 태	-	
		색 채	◦ 지붕 : 1차색을 지양하고 2,3차색 사용 권장(연한 녹색 및 파란색 계열) ◦ 벽면 : 지붕색과 명도차를 두어 2, 3차색 사용 권장 ◦ 건축물 용도에 따른 동일색 사용 지양	
		건축선	◦ 건축 한계선 : 획지경계선에서 1m이하 이격하여 지정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및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제1종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관련 도면 게재생략.

7. 산업단지 지정 지형도면 고시도 : 관련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률』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t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8.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목포시 기업유치실(061-270-42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목포시 고시 제2019-78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불 임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6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1	목포시 산정로 184	2019.04.15	건물멸실
2	목포시 산정로186번길 2-1	2019.04.15	건물멸실
3	목포시 뚝섬길24번길 1-1	2019.04.15	건물멸실
4	목포시 뚝섬길24번길 3	2019.04.15	건물멸실
5	목포시 원산로59번길 31	2019.04.15	건물멸실

목포시 공고 제2019-496호

도로지정(건축허가·신고)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1. 제 목 : 도로지정(건축허가·신고)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 2019. 4. 15. ~ 2019. 4. 29.(15일간)
4. 공고내용

일련 번호	대 지 위 치 (목포시)	건축주 (동의자)	허가번호	도로지정 현황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길이 (m)	너비 (m)	면적 (㎡)	
1	용당동 1090-30	서종선	2019-신축신고-2	10.3	0.722	7.44	동의
2	용해동 490-1	박현	2019-신축허가-1	44.66	0.918	41	동의
4	상동 268 외 2필지	디자인 건축 어울림 유한회사	2019-신축신고-9	45	6	267	동의
5	용해동 413외3필지	임주하	2019-신축허가-26	58	6.5	429	동의

5. 공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건축행정과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공고 기간 내에 목포시청 건축행정과로 문의(☎061-270-347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공고 제2019-500호

공유재산 매각 일반경쟁 입찰 재공고

전라남도 목포시 공유재산을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코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매각 입찰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1. 입찰건명 : 공유재산(건물) 매각 일반경쟁입찰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m²)

소 재 지	면적(단위 : m ²)			건축구조	예정가격	비 고
	전용면적	공유면적	대지권비율			
합 계					84,200,000	
목포시 상동 845번지 비파아파트 1차상가 지하2호	84.6	26	46.93/12855.6	철근 콘크리트조	8,015,000	
목포시 상동 845번지 비파아파트 1차상가 지하3호	84.6	26	46.93/12855.6		8,015,000	
목포시 상동 845번지 비파아파트 1차상가 지하5호	118.2	36.34	65.55/12855.6		13,020,000	
목포시 상동 845-1번지 비파아파트 2차상가 지하1호	84	23.35	37.80/12937.5		34,050,000	
목포시 상동 845-1번지 비파아파트 2차상가 지하2호	84	23.35	37.80/12937.5			
목포시 상동 845-1번지 비파아파트 2차상가 지하3호	84	23.35	37.80/12937.5			
목포시 상동 845-1번지 비파아파트 2차상가 지하5호	117.3	32.61	52.78/12937.5		21,100,000	

3. 입찰참가자격

-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나.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입찰방법

- 가. 일반경쟁 입찰, 총액입찰,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입찰
- 나.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 다.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 2019. 4. 15(월). 10:00
-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 2019. 5. 3(금). 16:00
- 다. 개찰일시 : 2019. 5. 7(화). 10:00 (목포시청 건축행정과 입찰집행관 PC)

6. 입찰서의 제출

- 가.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나. 입찰서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온비드>-<입찰내역>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시간 및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시간 등 입찰관련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또한 동일한 입찰자가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부족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찰 접수마감 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 접수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온비드>-<입찰내역>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 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 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입찰서의 보증금 납부계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처리

가.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의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입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나.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 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번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로 인하여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는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시금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입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낙찰자는 예정금액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로 결정하되, 최고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입찰 참가자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공개된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경우는 무효로 처리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5%) 한도액을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무효로 합니다.

라. 동일인이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효 입찰서를 제출할 때 무효로 처리합니다.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 시스템 장애 또는 공고내용의 중대한 하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입찰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2.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전자입찰관련법령, 입찰공고사항, 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매매 계약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시와 매매계약을 체결(계약대금은 매각대금의 10/100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음)하여야 하며, 만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 나. 매각대금의 잔금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정기간 내에 매매계약 및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는 낙찰 및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 다. 계약 체결 장소 : 목포시청 건축행정과
- 라. 계약체결시 준비 서류
 -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지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1부
 -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계약보증금(낙찰금액의 10%)

14.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한 각종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우리 시 소관 공유재산 매각 입찰에 활용하는 입찰입니다.
- 나. 본 공고는 목포시청 홈페이지 및 온비드(www.onbid.co.kr)에 동시에 공고 내용을 공고하였으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온비드에 공고한 내용이 우선 합니다.
- 다. 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까지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라. 본 매각 재산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매각재산의 현장 및 각종공부, 입찰공고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철저히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매각 입찰 공고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확인 및 열람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마. 본 매각대상 재산은 현 상태로 매각합니다. 따라서 각종공부와 불일치, 주변 이웃과의 분쟁사항, 기타 시설(폐기물, 매매 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사유시설, 화장실 없음 등)의 제거 및 철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이행강제금등 제비용 부담 포함) 등은 매수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매각합니다.
- 바. 매매계약 체결이후 공고,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과납금 중에서 계약보증금(국고 귀속 사유 발생시), 원상복구비용,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잔액만을 이자 가산 없이 반환 조치됩니다.
- 사. 낙찰자가 다른 법령이나 행정상 제한사항에 의한 요건 미비로 등기 또는 취득제한이나 취득 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 하더라도 우리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아.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야 가능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낙찰자이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은 불가합니다.

자.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포함)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합니다.

15.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및 온비드 센터(1588-5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 여부 : 나의 온비드/ 입찰내역/ 입찰상세보기

다. 입찰결과 : 나의 온비드/ 입찰내역/ 입찰결과

라. 공고내용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mokpo.go.kr>) 공고 고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 기타사항은 목포시청 건축행정과 (061-270-35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공고 제2019-507호

소 하 천 점 용 허 가 공 고

「소하천정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목 포 시 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목포시청(공원녹지과)		
	대표자 (성 명)		주소	목포시 수문로 32
소하천명		삼향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목포시 옥암동 1060		
	면적	4.5 m ²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²
	기간	2019. 4. 3. ~ 2024. 4. 2. (5년)		
	목적 및 사유	물탱크설치(난간걸이화분 자동화 급수 시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